

1.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3만2천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시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 하나인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선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이를 작성·발행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를 유사한 국가 면허·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금액(3만2천원)을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변경(안 제29조의6)

나.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안 별지 제20호의4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29조의9 [별지 제20호
의4서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을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 출할 때에는 <u>응시 수수료 3만2천</u> <u>원을</u>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 다. 1. · 2. (생 략)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시원의 장이 보</u> <u>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u> <u>한 수수료를</u> ----- ----- --. 1. ·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0000. 00. 00.>

년 제 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수 실적	교육과정명				
	강의과정 (이론·실기)		이수기간		이수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론) 시간(①)
					(실기) 시간(②)
	현장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	현장실습기간	실습시간
	세부 과정	시설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재가 (방문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재가 (주·야간보호)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총 현장실습시간(③)			시간
	총 이수시간(①+②+③)				시간

(* 교육수료 내용은 실제 이수한 기간 및 시간을 기재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